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32
----------	-------

발의연월일 : 2025. 7. 25.

발 의 자 : 박덕흠 · 김장겸 · 강대식
서천호 · 김예지 · 구자근
김대식 · 김정재 · 추경호
서지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기사에 대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자동 댓글은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댓글을 생성하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등만 규제하고 있을 뿐 자동 댓글에 대하여는 명시적 제한을 하지 아니하여 자동 댓글로 인한 여론 조작 및 선거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음.

이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이 제공하는 기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다수의 댓글을 생성하여 달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제3항 신설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8의 제목 중 “선거운동”을 “선거운동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의 기간 중 자신이 제공하는 기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다수의 댓글(기사에 대하여 독자가 자신의 의견을 게시한 것을 말한다)을 생성하여 달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1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82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①·② (생략) <u><신 설></u>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의 기간 중 자신이 제공하는 기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다수의 댓글(기사에 대하여 독자가 자신의 의견을 게시한 것을 말한다)을 생성하여 달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 설></u>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82조의8제3항을 위반하</u>

2. ~ 4. (생 략) ③ ~ ⑫ (생 략)	<u>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u> <u>한 자</u>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⑫ (현행과 같음)
---	--